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

판 결

사건 2023고단1332 점유이탈물횡령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, 사기

피고인 A

검사 박영철(검사직무대리, 기소), 윤치호(공판)

판결선고 2023. 10. 26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500,000원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1. 점유이탈물횡령

피고인은 2023. 4. 2. 14:00경 안양시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.

2.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

가. 피고인은 2023. 4. 2. 20:1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2갑과 추팝 춥스 사탕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,200원을 결제

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,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.

나.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:15경 같은 F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,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,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D의 진술서
- 1. 발생보고서(점유이탈물횡령), 현장사진, 입건전조사보고서, 수사보고서('F편의점' 내부 CCTV 영상1), 수사보고서('F편의점' 내부 CCTV 영상2), 수사보고서(피의자 이동동선 및 LOST 112 검색), 수사보고서(피의자특정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60조 제1항(점유이탈물횡령의 점)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(분실카드 사용의 점, 포괄하여), 각 형법 제347조 제1항(사기의 점), 각 벌금형 선택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(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)

양형의 이유

이 사건 범행은,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담배, 사탕의 구입대금을 2회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.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.

한편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,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편의점 업주로부터 '다른 사람 카드인 것 같다'는 말을 듣고,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위 체크카드 결재내역을 직접 취소하였으며,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안양지구대에 방문한 점,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, 직업, 환경,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박정진